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가단」 선정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3년도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과제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최정예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1.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이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단*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주주기를 책임 관리·지원하여 新제품·서비스 개발, 창업 등 新산업 조기 창출 및 성공률 제고
- * 사업단 관련 사항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106호) 참조

- ◇ 기술사업화 전문가단(CIG, Commercializing Instructors Group) : 기술사업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지식·노하우·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정예 전문가(CI)들로 구성된 사업화 지원 그룹
- ◇ 전문가단장(CCI, Chief CI) : 5~6명의 CI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책임자로 CCI의 경험·노하우·인맥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단 구성 및 사업단의 문제해결 지원

2. 지원내용

- 모집 규모 : 1개 전문가단
- * 전문가단은 2개 사업단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수행
- 활동 기간 : 사업단 선정부터 사업단 사업 종료까지(2개월+2년)
- * 전문가단의 사업단 선정은 2개월 가량 소요 예정, 사업단 사업기간은 2년
- 전문가단(CIG) 운영비 지원규모 : 연간 총 5억원 내외
- * 활동 기간 및 운영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전문가단(CIG)의 역할

- (기본 역할) IP, 기술 평가·발굴·거래, 시장 분석·전략 기획, Fund, 기업 인큐베이팅 등 사업단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
- (사업단 선정)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사업단의 선정·평가 업무 수행
- * 전문가단이 사업단 선정시 한국연구재단의 R&D사업 평가위원 풀(Pool)을 활용하여 사업단의 기술분야 평가 지원 예정
- (사업단 지원) 선정된 사업단이 수행하는 Post R&D*, Production, Promotion**, 창업 등을 상시 지원하여 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 지원
- * 기존 지식·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한 아이템의 체계화 및 마무리 연구
- ** 사업종료시 국내외의 관련 분야 박람회·컨퍼런스 등 출품 지원

《 (예시) 전문가단의 주요 지원 업무》

1. 사업단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자문
2. 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3. 사업단의 사업화 관련 예산의 집행 점검 및 필요시 수정 변경 요청
4. 사업단 과제 종료 후 사업성과의 최종 활용 방안 종합 분석 등 사후 관리
5. 기타 기술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신청요건

□ 전문가단(CIG) 구성 원칙

- 전문가단장(CCI, Chief CI)이 기술사업화 분야별 최고 전문가(CI, 5~6명)로 전문가단(CIG)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예시를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CCI는 상근 근무 필수(CI는 비상근 근무 원칙)
- * 기술사업화 분야(예시) : IP, 기술 평가·발굴·거래, 시장 분석·전략 기획, Fund, 기업 인큐베이팅 등

□ 전문가단장(CCI)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 ② 新제품·서비스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경험, 사업화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자
 - ③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전문가단(CIG)을 이끌어 사업단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자
- *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단 운영 및 사업단의 관리·지원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동의 필요
 - * 전문가단장 선임 후 현재 수행중인 연구사업이나 소속기관의 업무 참여 불가

□ 전문가(CI)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 ② 新제품·서비스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관리능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경험, 사업화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자

5. 전문가단장(CCI) 근무조건

-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에 상근직으로 고용
- 임기는 전문가단 선정부터 사업단 사업종료까지 2년 내외, 평가를 통해 연임 가능
- 보수는 한국연구재단의 PM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며, 사업성평가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보수는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과정에서 조정 가능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기본방향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가단 활동계획 등 사업화 지원 계획, 전문가단의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전문가단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최종선정
CIG 공모 (6.21~7.22)		발표평가 대상 CIG 선정 (7.24~7.26)		최종 CIG 선정 (7.29~7.31)		CIG 선정 공고 (8.2)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모 및 재공모를 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발표평가 대상 전문가단을 3배수 이내로 선정
 - 서류평가 합격 전문가단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시 개별 통보
- **(2차 발표평가)**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가 전문가단을 심층 평가
- **(최종 선정)** 2차 발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단 최종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사항	반영비율
사업 이해도	CIG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20
사업화 지원 계획	활동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우수성·실현 가능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40
CIG 역량	CCI 및 CI의 전문 역량, CIG 구성의 적절성	40

- * 우수한 기술사업화 전략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 분야 및 학력 등을 제한하지 않고 평가
- * 세부 평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6.21(금) ~ 7.22(월) 18:00 (32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주소 : rndplan@nrf.re.kr
 -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기획팀

- * 이메일로 서류 제출시 CIG 신청서는 스캔 이미지 형태로 첨부
-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와 방문·우편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시각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CIG 신청서 1부(붙임1)
 - * CIG 활동 계획서, 신청자 이력서 포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담당자(02-2210-2413)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기획팀 담당자(042-869-7866)

【붙임1】 CIG 응모서류 및 서식

【붙임2】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개요

붙임1 CIG 응모서류 및 서식

1. CIG 신청서

2. CIG 활동 계획서

3. 신청자 이력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술사업화 전문가단(CIG) 신청서

-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소속기관명, 기관구분, 부서명, 직위/직책은 작성하지 않음
 - 소속기관주소에 거주지 주소를 작성
 - 신청연구기관장 직인 필요 없음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신청연구기관장 직인 필수

☐ CIG 활동계획서

- 포괄적인 내용 작성과 논리전개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본문내용은 서술형으로 작성
-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일부 변경 가능
 -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11 pt)는 본 양식에서 수정 불가
- 활동계획서 본문은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자 이력서

- 전문가단장(CCI)과 전문가(CI) 신청자 공통 서식
 - 전문가단장 및 전문가 별도 작성
- 필요시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가능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가단(CIG) 신청서

신 청 자 (CCI)	성명(한문)		전화번호	
	생년월일		팩스번호	
	이 메 일		휴 대 폰	
	소속기관명		기관구분	학(), 연(), 산()
	부 서 명		직위/직책	
	소속기관주소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연구기관장 : [직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CIG 활동 계획서

< 목 차 >

1. 비전과 목표 1

2. CIG 구성 및 운영 방안 1

3. 사업단 선정 방안 1

4. 사업단 지원 전략 및 계획 1

5. 기대효과 1

6. CIG 운영예산안 2

※ 총 분량은 25p 이내로 작성

1. 비전과 목표

- ※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CIG 운영, 사업단 지원에 대한 비전을 기술
- ※ CIG 운영과 사업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

2. CIG 구성 및 운영 방안

- ※ CIG의 인력 구성과 추진 체계 및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
- ※ CIG의 운영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사업단 선정 방안

- ※ 新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단 선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단 지원 전략 및 계획

- ※ 사업단 지원·관리 전략 및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 사업단 지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협력 네트워크 활용 전략 및 확대 구축 전략을 기술

5. 기대효과

- ※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기술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

6. CIG 운영예산안

- ※ CIG 운영 및 사업단 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
- ※ 제시된 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필요 예산은 별도의 표를 추가하여 제시할 것

< 운영 예산 총괄표 >

(단위 : 천원)

								양식A611		
비 목	세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3	2014					
직 접 비	인건 비	내부 인건 비	미지급						0	
			지급	현금						0
				현물						0
		외부 인건 비	미지급						0	
			지급	현금						0
				현물						0
	학생인건비								0	
	인건비소계			0	0	0	0	0	0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0	
		현물							0	
	연구활동비								0	
	연구과제추진비								0	
	연구수당								0	
	연구비소계			0	0	0	0	0	0	
	위탁연구개발비								0	
간접비								0		
연구비 총액			0	0	0	0	0	0		

※ 이 표는 변경 및 삭제가 불가능함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지급·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 연구비는 천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하고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현물은 작성하지 않음

※ <운영예산총괄표>의 1차년도 비목별 금액과 <운영예산 비목별 소요명세(1차년도)>의 비목별 금액은 일치되게 작성(비목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업로드 에러 발생)

< 운영예산 비목별 소요명세 (1차년도) >

(1) 직접비	천원
---------	----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연구책임자만 기재)

(단위 : 천원)

양식A401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책임					2013. 06. 01	2014. 05. 31	
					%	12	

※ 자격,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 기재하지 않음

※ 소속기관 입력시 특정연구기관(KAIST, GIST, DGIST)인 경우 반드시 한글명칭(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으로 입력

※ 직급 (연구소 해당)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등

※ 직위(대학 해당)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시간강사, 전임강사,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석좌교수 등)

※ 국적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코드검색에서 '국가코드'를 검색하여 기재하되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만 검색하여 기재

※ 월급여 :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참여율

-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지급구분 : 동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자의 경우,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 단,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계상이 가능하나,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내부인건비 금액과 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 총액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양식A612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0	0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인력만 기재(연구책임자는 기재하지 않음), 동료교수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개인 단위 과제)

※ 상기 양식의 외부인건비는 자금인력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지급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A611(총괄표)에 해당 금액만 기재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외부인건비(지급) 금액과 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양식A613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0	0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외부인건비(지급) 금액과 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양식A60 6			
구분	총액	내용	비고(기재 항목)
연구장비·재료비		(예시) 품목명 x 단가 x 수량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
합 계	0		

※ 연구장비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 장비로 국한하여 반드시 3개 이내 및 50,000천원 이내로 계상(연구장비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여타 비목으로의 전용 및 변경 불가)

(라)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무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기재하지 않음		
합계			0	

※ 연구활동비 합계가 A611의 연구활동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 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계			0	

※ 연구과제추진비 합계가 A611의 연구과제 추진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양식A61 6
구분	산정기준	금액(천원)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천원			
합계		0		

※ 연구수당 합계가 A611의 연구수당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사) 위탁연구개발비 : 기재하지 않음

(2) 간접비	기재하지 않음	천 원
---------	---------	-----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구 분	CCI (), CI ()
성명(한문)		전화번호	
생년월일		팩스번호	
이 메 일		휴 대 폰	
소속기관명		기관구분	산(), 학(), 연()
부 서 명		직위/직책	
소속기관주소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부 서	직위/직책

4. 주요 실적 (최근 실적부터 기재)

가. 사업화 지원 실적

※ 사업화 실적, 사업화 지원 실적 기재,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유형 ¹⁾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 ²⁾)	연구성과 이용유형 ³⁾	사업화 지원 제품/용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 ⁴⁾

※ ¹⁾란에는 사업화, 정보 분석 및 제공, 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상담 및 자문, 자금투자 및 유치 등 실적 유형을 기재

²⁾란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내에 기재

³⁾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⁴⁾란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향상효과(%) 등 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등 기재

나. 주요 성공사례

※ 사업화 지원 이후 해당 기업 매출증가 등 성공사례

다. 기타 주요 실적 (최근 실적부터 기재)

※ 기술 사업화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증, 논문, 특허, 수상 등 실적을 기재

붙임2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목표

- '15년까지 新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新제품·서비스 2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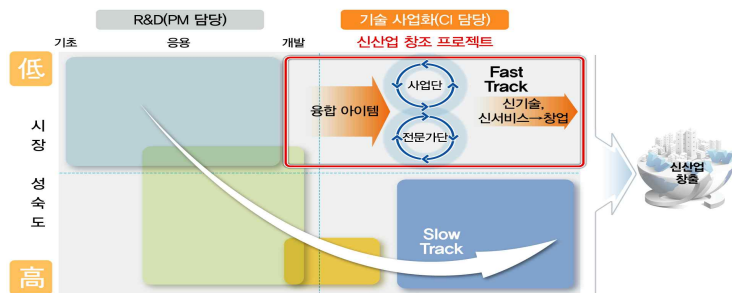
□ 추진전략

新산업 조기 창출을 위해 新개념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 ◇ 기존 Slow Track과 달리, 새로운 지원 영역과 방식 선택을 통해 기술-BM-인맥 일괄 연계·해소형 Fast Track 구현

- (新영역) 창의성 기반 지식·기술·산업 융합 아이템(新제품·서비스)을 발굴하여 기술 사업화 바로 지원(기술-BM의 연계)
- (新방식) 사업화 시간단축, 성공률 제고를 위해 최정에 전문가단*이 아이템(=사업단) 직접 선정, 끝까지 지원(BM-인맥의 연계)
- * 기술 사업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지식·노하우, 훌륭한 네트워크 보유

< 추진전략 개념도 >



□ 주요 추진사항

- (미래부) 국내외 주요기관이 발표한 유망기술 및 관련 부처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17개 시범사업 과제 제시(KISTEP 협조)

< 플랫폼형 융합기술 시범사업 분야 제시(안) >

과학기술+CT 융합 분야			과학기술+문화콘텐츠 등 융합	
① 웨어러블 컴퓨터	⑤ 빅 데이터	⑨ 클라우드 서비스	① 게임	⑤ 디지털 컨버전스(종·복합)
② 스마트 콘텐츠	⑥ 생체 인식	⑩ 스마트 자동차	② 영상·뉴미디어	⑥ 공공문화 서비스
③ 지능형 로봇	⑦ 보안	⑪ 바이오 센서	③ 가상현실	
④ 사물 인터넷	⑧ 에너지 수집·효율화		④ 창작·공연·전시	

- (연구재단) 전문가단 및 사업단 선정공고, 전문가단의 제안서 평가 및 사업단 선정 등 활동 지원

* 예 : 전문가단 선정 공고(1~1.5개월), 사업단 선정 공고(1.5~2개월) → 전문가단 선정 후 워크숍(비전·목표 공유, 사업단 평가방향 설정) → 사업단 선정

- (전문가단) 한국연구재단 협조 하에 2단계 과정* 거쳐 사업단 선정**

* 1단계) 제안서 평가 → 우수 제안서 선정(5배수 이내) → 우수 제안서 대상 세부 기획

* 2단계) 세부기획 평가 → 사업단 선정

** 전문가단이 사업단 선정시, 기술 분야별 전문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존의 R&D 사업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지원

- (사업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선정 후 사업 세부기획** 수립, 사업단 선정 후 전문가단의 소주기 지원 하에 신속히 사업추진

* 해당분야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연구개발 역량, 기술에 대한 이해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관련기술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제안서 작성

** 해당 분야 관련 기업의 참여방안이 포함되도록 기획

< 시범사업 추진 절차도 >

